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1953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민정(기소), 박숙영, 김마로, 정홍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보인(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정634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 회사(I, 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광고·홍보물을 본래의 목적 내지 용도대로 이용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이익을 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도 없으며,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26. 1. 8.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1항 중 범행 일시 및 범행 횟수에 관한 "2022. 10. 3.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부분을 "2022. 8. 9.경까지 총 163회에 걸쳐"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2026. 3. 10.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2항 중 "순번 17 ~ 38번 기재" 부분을 "순번 73 내지 163 기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제4, 5회 공판기일에 이를 각각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다.

나.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복제하여 임의로 게시한 피해 회사의 저작물'에 관하여 '제품 사진, 상세설명 페이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6. 1. 8. 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피해 회사 제품명'과 함께 해당 제품의 '상세 페이지' 내지 '사용례'에 관한 이미지 사진이 '침해 저작물'란에 현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 중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가 미필적으로나 마 피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일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① 피고인들은 중국에 본사를 둔 피해 회사가 중국의 인터넷쇼핑몰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인터넷쇼핑몰 E, F, G, H 사이트(이하 '국내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이라고 한다)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피해 회사가 중국의 인터넷쇼핑몰 사이트 등에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침해 저작물'란 기재와 같은 사진이나 상품 정보가 기재된 상세설명 페이지 등(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을 그대로 복제하여 국내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 회사와 제품 판매 또는 이 사건 저작물 이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은 적이 없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 회사의 묵시적인 이용허락이 있었다거나, 묵시적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이 유도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사건과 유사한 구매대행업자 내지 재판매업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처벌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설령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상당 기간 이를 방치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제조업자가 광고·홍보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를 판매업자가 인터넷쇼핑몰 사이트 등에 그대로 게시하여 이용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용인하는 상거래 관행이 존재한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④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도 매출 증대 등의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차적으로 피고인들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행위인 점, 피해 회사는 이미 다른 국내업체들과 물품공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의 공식적인 방법으로 국내에서 자신의 제품을 유통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국내업체들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어떠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¹⁾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21. 3. 17.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서 전자제품 구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1.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인터넷쇼핑몰 E, F, G, H 사이트에 피해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J' 제품 사진, 상세설명 페이지 등을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복제하여 임의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저작물인 피해 회사의 제품 사진, 상세설명 페이지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 내지 163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27

재판장 판사 김양훈 _____

 판사 김도형 _____

 판사 김윤집 _____